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8
----------	-----

제출년월일 : 2009.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용문구 정비(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20억원 이상)”로 상향된 것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을 반영함.

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용어의 정리(별지서식)

- “경쟁입찰”이 “입찰”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경쟁입찰”로 된 용어가 있는 별지 서식의 내용을 “입찰”로 용어 정리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8쪽)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제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심의(자문)요청 내용 란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제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 ----- ----- -----</p>
<p>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p>

현행	개정안
<p>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p> <p>-----</p> <p>-----</p> <p>④제3항에 따라 -----</p> <p>-----</p> <p>-----</p> <p>-----</p> <p>-----</p> <p>-----</p>
<p>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다음과 같은 공사로 한다.</p> <p>1.~8. (생략)</p> <p>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p>	<p>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p> <p>-----</p> <p>-----</p> <p>-----</p> <p>1.~8. (생략)</p> <p>9. 그 밖에 -----</p> <p>-----</p>
<p>제13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등) ①-----</p> <p>-----</p> <p>----- 범위에서 -----</p> <p>-----</p> <p>-----</p> <p>-----</p> <p>-----</p> <p>-----</p> <p>②제10조에 따라 -----</p> <p>-----</p> <p>----- 범위에서 -----</p> <p>-----</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용역, 물품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용역, 물품	
계 약 명					계 약 명				
추정가격		원	발주시기	년 월	추정가격		원	발주시기	년 월
발주자	기관명		담당자	성 명	발주자	기관명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연락처		연락처			
심의 (자문) 요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p>※ 해당내용에 √표시</p>			심의 (자문) 요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u>그 밖에</u>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체적으로 작성) <p>※ 해당내용에 √표시</p>		
첨부서류					첨부서류				
<p>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자문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담당자 : (직인)</p>					<p>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자문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담당자 : (직인)</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감독) ○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별 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07.9.20, 2009.1.13>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